



충청북도

www.cb21.net

# 도보

선 람	기관의 장

제2427호 2006년 10월 4일 (수)

##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950호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충청북도조례 제2951호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충청북도조례 제2952호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충청북도조례 제295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충청북도조례 제2954호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11
- 충청북도조례 제2955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13
- 충청북도조례 제2956호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17

## 규 칙

- 충청북도규칙 제2556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18
- 충청북도규칙 제255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7

## 훈 령

- 충청북도훈령 제1219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9

##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50

회 람									
--------	--	--	--	--	--	--	--	--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7호	충청북도문화재지정고시	51
충청북도고시 제2006-1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55
충청북도고시 제2006-14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56
충청북도고시 제2006-1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57

**공 고**

충청북도공고 제2006-56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58
충청북도공고 제2006-568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60
충청북도공고 제2006-570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1
충청북도공고 제2006-571호	충청북도지정문화재지정예고공고	65
충청북도공고 제2006-572호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공고	70
충청북도공고 제2006-574호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71

**시군행정**

△ 고 시

충주시고시 제2006-97호	충주 도시계획시설(학교:충주대학교)변경결정및 지형도면승인고시	75
충주시고시 제2006-99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76
음성군고시 제2006-56호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	79
음성군고시 제2006-58호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 고시	82
음성군고시 제2006-59호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	84
음성군고시 제2006-60호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	86
단양군고시 제2006-30호	매포 도담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88

△ 공 고

음성군공고 제2006-111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91
-------------------	---------------	----

**기 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 제2006-35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92
울산광역시공고 제2006-8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창공업) 시행자지정 행정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93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950호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심의회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제15조의2를 제15조의 3으로 변경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손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인용조문 변경
- 지방의원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 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 심의회 출석위원 지급 수당을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충청북도조례 제2951호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명시·조문 표현방식 통일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오기된 표기 정정(안 제24조제3항 등)
- 조항 명시로 조문내용 명확히 함(안 제41조제2항제3호)

## ◎ 충청북도조례 제2952호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고액·상습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이상 고액 상습 채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채납자 정보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세 채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신설, 안 제9조의3)
  - 대 상 :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채납자
- 지방세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설치(신설, 안 제9조의 4)
  - 구 성 : 위원장 포함 9인 이내
  - 기 능 : 채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 충청북도조례 제295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로 한다.

제2조중 “2,616명”을 “2,62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60명”을 “1,465명”으로 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616명을 2,621명(증원 5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68명을 972명(증원 4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 1,290명을 1,291명(증원 1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화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정원	2,621	972	65	1,291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70	805	40	64	161
	2-3급	1		1		
	3급	8	6		1	1
	3-4급	1	1			
	4급	57	37	7	5	8
	5급	209	166	7	14	22
	6급	357	272	13	18	54
	7급	377	279	12	22	64
	8급	59	43		4	12
	9급	1	1			
일반 반정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7급	1	1			
별정직	소계	17	10	1	5	1
	1급	1	1			
	5급	2	2			
	6급	9	3		5	1
	7급	3	2	1		
	8급	1	1			
연구직	소계	139	1		109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8	1		91	26
지도직	소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방직	소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기능직	조교	11			11	
	소계	275	93	23	57	102
	6급	9	6	1	1	1
	7급	29	10	3	4	12
	8급	54	17	1	4	32
	9급	88	24	8	29	27
10급	95	36	10	19	30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기능을 보강 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16명 ⇒ 2,621명 (증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60명 ⇒ 1,465명 (증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일반직 증5명
  - 국가직 → 지방직 전환 : 3명(3급 증1, 3~4급 증1, 4급 증1)

◎ 충청북도조례 제2954호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

◎ 충청북도조례 제2955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 또는 다른 법률 ”로 한다.

제2조제3호중 “ 「지방재정법」 제64조 ”를 “ 「지방재정법」 제77조 ”로 한다.

제4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의 예치

제5조제3항중 “ 「지방재정법」 제29조 ”를 “ 「지방재정법」 제34조 ”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0조 내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금관련 전문가

2.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를 제16조로 하며, 동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변경(안 제9조~제1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안 제17조)



◎ 충청북도조례 제2956호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조례 제2030호, 1993. 3. 2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b>규 칙</b>
------------

◎ 충청북도규칙 제2556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616명을 2,621명(증5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68명을 972명(증4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 1,290명을 1,291명(증1명)으로 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인력과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관련 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16명 ⇒ 2,621명(증 5명)
  - 본 청 : 968명 ⇒ 972명(증4명)
  - 직속기관 : 1,290명 ⇒ 1,291명(증1명)
- 직렬별 내역 : 증 5명
  - 행정3급 1명, 행정3-4급 1명, 행정4급 1명,  
행정·보건·간호5급 1명, 행정·보건6급 1명

[별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표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행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총 괄	합 계		2,621	972	65	1,291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 직		1,070	805	40	64	161	
	일반 별정		4	3	1			
	별 정 직		17	10	1	5	1	
	연구 직		139	1		109	29	
	지도 직		24			24		
	소 방 직		1,047	59		988		
	교 원		44			44		
	기 능 직		275	93	23	57	102	
관	일반직 계		1,070	805	40	64	161	
	2-3급	소 계	1		1			
		행정	1		1			
	3급	소 계	8	6		1	1	
		행정	8	6		1	1	
	3-4급	소 계	1	1				
		행정	1	1				
	단	4급	소 계	57	37	7	5	8
			행정	29	19	4	4	2
			농림수산	2	2			
		보건 의무	1	1				
		시찰	4	4				
		행정.임업	3	3				
		행정.농림수산	3	1	1	1		
		행정.보건 의무	1		1			
		행정.시찰	5	2	1		2	
		행정.통신	1	1				
		임업.시찰	1				1	
		농림수산.환경	1	1				
		농림수산.농림연구관	1				1	
		행정.농림수산.시찰	1	1				
		행정.환경.시찰	1	1				
		농림수산.환경.임업연구관	1				1	
		농림수산.축산연구관	1				1	
		기초위생연구관	1				1	
		임업.농림수산.보건 의무.환경	1	1				
전 담	5급	소 계	209	166	7	14	22	
		행정	113	93	6	8	6	
		전산	3	2		1		
		임업	6	4			2	
		임업	3	2			1	
		축산	1	1				
		수익	2	2				
		수산	1	1				
		보건	2	1		1		
		환경	3	2		1		
	토목	15	12		1	2		



지역, 산업, 직종별		기관별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계	본청				
민	6	농업	12	10		1	
		임업	14	8		6	
		축산	3	3			
		수의	13	3		10	
		수산	1	1			
		보건	5	4		1	
		간호	2	2			
		환경	4	4			
		선박	1	1			
		토목	37	30		7	
		건축	10	9		1	
		지적	4	4			
		통신	3	3			
		전자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기계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토목	1	1			
		전산.전자통신	1	1			
		기계.전기	1			1	
		기계.농업	1			1	
		기계.토목	1			1	
		전기.항공	1	1			
		전기.자원	1	1			
		전기.토목	1	1			
		전기.전자통신	1	1			
		항공.환경	3	3			
		임업.임업연구사	1			1	
		축산.축산연구사	2			2	
		수의.가축위생연구사	1			1	
		수산.수산연구사	3			3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1	1					
도시계획.토목	1	1					
통신.전자통신	3	3					
행정.토목.건축	2	2					
소 계	377	279	12	22	64		
민	7	행정	186	147	11	13	15
		세무	3	3			
		사회복지	1	1			
		전산	15	14		1	
		사서	3		1	2	
		기계	9	5		1	3
		전기	6	3		2	1
		항공	3	3			
		농업	13	11		1	1
		임업	13	6			7
		축산	3	2			1
		수의	3	1			12

전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인	7	수산	3	1			2
		보건	7	7			
		식품위생	3	1		1	1
		간호	1			1	
		환경	6	6			
		산림	1	1			
		토목	40	26			14
		건축	8	6			2
		지적	3	3			
		통신	2	2			
		전자통신	2	2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지적	1	1			
		기계.전기	2				2
		전기.자원	1	1			
		전기.전자통신	1	1			
		항공.환경	1	1			
		항공.토목	1				1
		항공.통신	1	1			
		임업.임업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토목	1	1			
도시계획.토목	1	1					
토목.건축	2	2					
통신.전자통신	5	5					
소 계		59	43		4	12	
인	8	행정	21	18		1	2
		사회복지	2	1			1
		전산	4	2		2	
		전기	1	1			
		항공	1	1			
		자원	1	1			
		농업	2	1			1
		임업	3				3
		수산	1	1			
		수산	2				2
		보건	2	2			
		식품위생	2	1		1	
		환경	3	2			1
		토목	7	5			2
		건축	1	1			
		통신	2	2			
		행정.세무	1	1			
전산.지적	1	1					
항공.환경	1	1					
통신.전자통신	1	1					
인	9	소 계	1	1			
		행정	1	1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직종, 직급, 직렬별	직종, 직급, 직렬별						
일반 직위	일반: 별정직 계		4	3	1		
	5급 행정: 별정		2	1	1		
	6급 행정: 별정		1	1			
	7급 행정: 별정		1	1			
특별 직위	별정직 계		17	10	1	5	1
	1 소 계		1	1			
연구 직위	2 정무부지사		1	1			
	3 소 계		2	2			
	5 문화재전문위원		1	1			
	6 홍보연구원		1	1			
	6 소 계		9	3		5	1
	6 비서		1	1			
	7 사진기사(VTR촬영편집)		1	1			
	7 사진기사(촬영, 현상인화)		1	1			
	7 레이크에이전시도사		1			1	
	7 농기계교육교관		4			4	
7 종자정선기사		1				1	
연구 직위	7 소 계		3	2	1		
	7 공보편집원		1		1		
	8 비서		1	1			
	8 사진기사(촬영, 현상인화)		1	1			
연구 직위	8 소 계		1	1			
	9 비서		1	1			
연구 직위	9 소 계		1	1			
	9 비서		1	1			
연구 직위	연구직 계		139	1		109	29
	소 계		21			18	3
	농업연구		9			9	
	임업연구		1				1
	축산연구		1				1
	가축위생연구		1				1
	보건연구		1			1	
	환경연구		2			2	
	가축위생연구, 보건연구		1			1	
	보건연구, 환경연구		4			4	
	보건연구, 가축위생연구, 환경연구		1			1	
	소 계		118	1		91	26
	학예연구		2	1			1
	농업연구		59			55	4
임업연구		4				4	
축산연구		3				3	
가축위생연구		12			2	10	
수산연구		4				4	
보건연구		8			8		
환경연구		26			26		
지도 직위	지도직 계		24			24	
	소 계		6			6	
	농촌지도		2			2	
	농촌지도, 생활지도		3			3	
지도 직위	농업연구, 농촌지도, 생활지도		1			1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지 도 직	지 도 직 사	소 계	18			18	
		농촌지도	14			14	
		생활지도	3			3	
		농업연구, 임업연구, 농촌지도	1			1	
소 방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직 계	1,047	59		988	
		소 방 정	10	2		8	
		소 방 형	29	10		19	
		소 방 경	58	4		54	
		소 방 위	67	6		61	
		소 방 장	142	11		131	
		소 방 교	324	24		300	
		소 방 사	417	2		415	
교 원 직		교원직 계	44			44	
		학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 관 직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275	93	23	57	102
		소 계	9	6	1	1	1
		통신	2	2			
		기계	2		1		1
		난방	2	1		1	
		운전	2	2			
		사무	1	1			
		소 계	29	10	3	4	12
		토목	1				1
		통신	2	1	1		
		기계	4		1	1	2
		난방	3			1	2
		운전	5	2			3
		선박	2	2			
		농림	1				1
		사무	5	1	1	1	2
		전산	1	1			
		조무	1	1			
		방호	1	1			
		기계, 운전	1	1			
농림, 위생	1				1		
사무, 전산	1			1			
소 계	54	17	1	4	32		
토목	2				2		
통신	1	1					
교환	1	1					
전기	2				2		
기계	13			1	12		
난방	3	1			2		
운전	12	8			4		
사무	8	4	1	1	2		
조무	5			2	3		
기계, 조무	3				3		
농림, 위생	2				2		
사무, 전산	1	1					
사무, 조무	1	1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계	분청				
기 9	소 계	88	24	8	29	27	
	통신	1			1		
	교환	1	1				
	전기	4	1			1	
	기계	2	1		2		
	난방	3			1		
	운전	28	3	2	9	14	
	농림	2			1	1	
	사무	24	13	6	5		
	전산	2	2				
	조우	11			4	7	
	건축.위생	1	1				
	기계.난방	1				1	
	기계.운전	3			2	1	
	기계.조우	1			1		
	사무.전산	1	1				
	사무.조우	3	1		1	1	
	기 10	소 계	95	36	10	19	30
		통신	1	1			
		기계	2				2
난방		1	1				
운전		8		1	4	3	
농림		1				1	
보건		1			1		
사무		50	30	9	8	3	
조우		25	1		5	19	
기계.조우		1			1		
농림.조우		2	1			1	
위생.조우		1	1				
사무.전산		1	1				
사무.조우		1				1	

◎ 충청북도규칙 제255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중 “국장은 부이사관”을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총무과장·공무원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민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교수단 수석교수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조항을 정비하고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기능 보강을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급 변경
  - 경제통상국장 : 부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 기획관 : 서기관 ⇒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 자치연수원 수석교수 : 행정사무관 ⇒ 지방서기관
- 직급 삭제
  - 기획관리실장 : 이사관·부이사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농업기술원장 :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분장사무 신설
  - 사회복지과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훈 령**

◎ 충청북도훈령 제1219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6년 10월 4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밑에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담당, 경로복지담당, 재활복지담당, 저출산대책담당을 두며, 기초생활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저출산대책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그 밖의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의 소속기관 및 보조·보좌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충청북도 국가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직종 직급 부서별	합 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직
			소방준감
계	3	2	1
기획관실	1	1	
총무과	1	1	
소방본부	1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종 직급 부서별	합 계	연구직	지도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계	3	1	1	1
농업기술원	3	1	1	1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직종 직급 부서별	합 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소방준감
계	6	3	1	1	1
기획관실	1	1			
총무과	1	1			
농업기술원	3	1	1	1	
소방본부	1				1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밑에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담당, 경로복지담당, 재활복지담당을 두며, 기초생활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그 밖의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제2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밑에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담당, 경로복지담당, 재활복지담당을 두며, 저출산대책담당을 두며, 기초생활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저출산대책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그 밖의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 관계법령 발취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직렬별 정원)** ①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1] 의회사무처

구		합계	총무 담당 관실	의사 담당 관실	의회 운영 전문 위원 실	기획 행정 전문 위원 실	교육 사회 전문 위원 실	산업 경제 전문 위원 실	관광 건설 전문 위원 실
총괄	합계	65	23	19	7	4	4	4	4
	일반직	40	12	10	6	3	3	3	3
	일반.별정	1	1						
	별정직	1	1						
	기능직	23	9	9	1	1	1	1	1
의무	계	40	12	10	6	3	3	3	3
	2-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7	1	1	1	1	1	1
		행정	4	1	1	1	1		
		행정.농림수산	1						1
		행정.보건임무	1					1	
		행정.시설	1						1
	5급	소계	7	2	3	2			
		행정	6	2	3	1			
		행정.환경.특별.건축	1			1			
	6급	소계	13	3	5	1	1	1	1
		행정	12	3	4	1	1	1	1
		전산	1		1				
	7급	소계	12	5	1	2	1	1	1
		행정	11	4	1	2	1	1	1
		사서	1	1					
	별정	계	1	1					
	7급	공보편집원	1	1					
	일반	계	1	1					
5급		행정.별정	1	1					
기계	계	23	9	9	1	1	1	1	
	6급	소계	1	1					
		기계	1	1					
	7급	소계	3	2	1				
		통신	1	1					
		기계	1	1					
		사무(필기)	1		1				
	8급	소계	1		1				
		사무(필기)	1		1				
	9급	소계	8	2	6				
운전		2	2						
	사무(필기)	6		6					
10급	소계	10	4	1	1	1	1	1	
	운전	1	1						
	사무	9	3	1	1	1	1	1	





구	분	구	부	과	과	과	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수	기	예	주	주	총	자	세	행	회	노				
								수	관	산	관	수	치	정	정	정	정	정	정			
5	관	행정건축		1																		
		전산토목		1																		
		전기.자원		1																		
		인공정비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환경토목		1																		
		토목건축		3	1		1															
		통신전자통신		1	1				1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토목		1																		
		전산.통신.전자통신		1	1				1				1									
		행정.전기.환경.자연		1																		
		행정.농업.토목.건축		1																		
		소 계		272	106	4	13	5	33	8	8	4	13	51	13	16	6	11	4	4	1	
		행정		125	68	4	6	3	19	8	6	4	1	36	10	15		6	4	4	1	
		세무		5	5		1							4			4					
6	사회복지		1																			
전산		15	13		1		8		1		7	4	2	1	1							
사서		1	1									1	1									
기계		7	2									2						2				
전기		3	1									1						1				
환경		5																				
농업		10																				
인업		8																				
축산		3																				
수위		3																				
수산		1																				
보건		4	1		1																	
간호		2																				
환경		4	1		1																	
선박		1																				
토목		30	3		2							1						1				
건축		9	2		1								1					1				
지적		4																				
통신		3	1				1					1										
전자통신		1	1				1					1										
행정.세무		1	1									1				1						
행정.사회복지		3	2				2															
행정.농업		1																				
행정.보건		2																				
행정.토목		1																				
전산.전자통신		1	1				1					1										
전기.환경		1																				
전기.자연		1																				
전기.토목		1																				
전기.전자통신		1	1				1					1										



구	부	계	기	관	민	공	기				자								
							신	기	예	장	신	총	자	세	회	관	노		
		합	계	관	민	공	신	기	예	장	신	총	자	세	회	관	노		
인	8	환경	2																
		토목	5																
		건축	1																
		통신	2																
		행정,세무	1	1								1			1				
		전산,지적	1																
		환경,환경	1																
		통신,전자통신	1	1					1				1						
	9	소	1																
합	행정	1																	
인	5	일반,행정계	3	3	1							2	2						
		행정,행정	1	1								1	1						
		6	행정,행정	1	1								1	1					
		7	행정,행정	1	1	1													
인	1	행정외계	10	9	4							5	5						
		1	소	1	1							1	1						
		2	경우부지사	1	1								1	1					
		3	소	2	1	1													
		4	문화재전문위원	1															
		5	홍보연구원	1	1	1													
		6	소	3	3	2							1	1					
		7	비서	1	1								1	1					
		8	사진기사(VTR촬영편집)	1	1	1													
		9	사진기사(촬영,영상인화)	1	1	1													
		10	소	2	2	1							1	1					
		인	7	비서	1	1								1	1				
8	소			1	1							1	1						
9	비서			1	1							1	1						
10	소			1	1							1	1						
인	8	비서	1	1							1	1							
		9	소	1	1							1	1						
인	9	비서	1	1							1	1							
		10	연구직계	1															
인	4	연구사	1																
		5	소	59															
		6	소	2															
		7	소	10															
		8	소	4															
		9	소	6															
		10	소	11															
		11	소	24															
		12	소	2															
		인	6	기능직계	93	58	7	2	1	8	2	1	1	4	40	12	7	1	20
1	소			6	4								4	1	1		2		
2	통신			2															
3	지방			1	1								1				1		
4	행정			2	2								2	1		2		1	
5	사무			1	1								1		1				
6	소			10	8	1			1		1		6	2	1		3		
7	통신			1	1	1													
8	행정			2	2								2				2		
9	선박			2															
10	사무			1	1				1		1								
11	전산			1	1										1		1		
12	조무			1	1								1	1					
13	행정	1	1								1	1							
14	전문	1	1								1				1				



구분	계	경제통상					복지환경					행정						
		소계	경제	통상	산업	기타	소계	사회복지	환경	보건	수질	소계	행정	산업	영유물	추산	산림	
소계	합계	314	99	26	24	25	107	24	33	29	21	108	24	23	13	20	22	
소계	일반직	295	95	24	23	23	100	23	29	28	20	100	22	22	17	19	20	
	기용직	19	4	2	1	1	7	1	4	1	1	8	2	1	1	2	2	
일반직	합계	295	95	24	23	23	100	23	29	28	20	100	22	22	17	19	20	
	3	소계	3	1	1			1	1			1	1					
일반직	행정	3	1	1			1	1			1	1						
	4	소계	13	4	1	1	1	4	1	1	1	5	1	1	1	1		
일반직	행정	3	2	1		1	1	1										
	5	행정수산	2									2			1	1		
일반직	보건업무	1					1			1								
	행정통상	2	2		1	1												
일반직	행정통상수산	1									1	1						
	행정수산환경	1										1				1		
일반직	행정통상수산시설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1							
일반직	행정통상수산보건의료	1					1		1									
	6	소계	65	20	5	5	6	4	22	5	6	6	5	23	5	5	4	5
일반직	행정	21	15	4	3	6	2	3	2			1	3	2		1		
	7	행정	4										4		2	2		
일반직	행정	2										2					2	
	8	추산	1									1					1	
일반직	수익	2										2					2	
	9	수산	1									1					1	
일반직	보건	1						1			1							
	10	환경	2					2		1		1						
일반직	토목	3						1			1	2		2				
	11	행정,사회복지	2					2	2									
일반직	행정통상	4										4	2	1	1			
	12	행정통상	1									1					1	
일반직	행정수산	1										1					1	
	13	행정보건	2					2			2							
일반직	행정환경	1						1		1								
	14	행정토목	1	1	1													
일반직	전기,자원	1	1				1											
	15	공업환경	1									1					1	
일반직	보건간호	1						1			1							
	16	보건행정	1					1		1								
일반직	환경토목	1						1			1							
	17	행정공업환경	1					1		1								
일반직	행정보건업무	1						1			1							
	18	행정보건업무	1					1			1							
일반직	행정보건간호	1						1	1									
	19	행정보건행정	1					1			1							
일반직	행정환경토목	1						1			1							
	20	기계,전기,환경	2	2		2												
일반직	항공,보건,환경	2						2			2							
	21	행정,전기,항공,자원	1	1				1										
일반직	행정공업토목간호	1									1	1						

구	부	계	경제총상					복지환경					농업					
			소	경	정	기	소	사	행	수	수	농	농	농	농	농		
		계	제	산	상	원	회	정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6	수	98	30	9	8	6	7	35	9	11	9	6	33	7	5	6	7	8
	행정	33	20	8	3	6	3	10	6	2	1	1	3	2		1		
	사회복지	1						1	1									
	전산	1										1	1					
	기계	2	2		1		1											
	전기	2	2		1		1											
	환경	4	3		2		1	1		1								
	농업	10											10	2	3	5		
	임업	8											8					8
	축산	3											3					3
	수원	3											3					3
	수산	1											1					1
	보건	3						3		1	1	1						
	간호	2						2			2							
	환경	3						3		2		1						
	농업	9	2	1	1			4		1		3	3	1	2			
	행정 사회복지	1						1	1									
	행정 임업	1											1	1				
	행정 보건	2						2	1		1							
	전기 자원	1	1				1											
	환경 임업	3						3		3								
	보건 수산	1						1			1							
	보건 환경	3						3			3							
	보건 보건	1						1		1								
	수	100	35	7	8	9	11	31	7	9	9	6	34	7	9	6	5	7
	행정	44	26	6	4	7	9	8	4	2	1	1	10	3	2	3	1	1
사회복지	1						1	1										
전산	1	1	1															
기계	1	1		1														
전기	1	1		1														
환경	2	2		1		1												
농업	11	2			2							9	2	4	3			
임업	6											6					6	
축산	2											2					2	
수원	1											1					1	
수산	1											1					1	
보건	7						7			6	1							
간호	6						6		5		1							
환경	6						2				2	4	1	3				
간호	1	1		1														
행정 사회복지	2						2	2										
행정 임업	1											1	1					
행정 보건	1						1			1								
행정 보건	1						1		1									
전기 자원	1	1				1												
환경 임업	1						1		1									
보건 수산	1						1			1								
보건 보건	1						1				1							





구	비	계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	문화	체육	관광	건축	소	지역	민방	재난	지	교	도	혁신	소	소	방	
		계	예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개발	위안	관리	책	통	로	도시	방	방	구		
		계	수	관	관	관	관	과	전	과	과	과	과	지원	과	과	과		
소	합	285	71	25	13	19	14	152	24	37	26	14	18	18	15	62	21	41	
	일반	208	64	21	12	18	13	143	23	33	25	13	17	15	1	1			
	직접	1	1	1															
	연구	1	1	1															
	기	59													59	19	40		
계	기	16	5	2	1	1	1	9	1	4	1	1	1	1	2	1	1		
	일반	208	64	21	12	18	13	143	23	33	25	13	17	15	1	1			
	3	소	2	1	1			1	1										
	4	소	2	1	1			1	1										
	4	소	11	4	1	1	1	7	1	1	1	1	1	1					
단	4	소	4	3	1	1	1	1						1					
	4	소	4	1			1	3			1	1		1					
	4	소	1				1					1							
	4	소	2				2	1	1										
	5	소	42	14	4	3	4	3	28	5	5	5	3	4	3	3			
	5	소	21	11	4	3	3	1	10	1	1	2	1	2	1	2			
	5	소	9					9	3	2	1			2	1				
	5	소	2	2				2											
	5	소	2					2				2							
	5	소	1					1	1										
단	5	소	1					1			1								
	5	소	2	1			1	1			1								
	5	소	1					1											
	5	소	2	1			1	1			1								
	5	소	1					1			1								
	5	소	1					1											
	5	소	1					1			1								
	5	소	1					1											
	5	소	1					1			1								
	5	소	1					1											
단	6	소	68	19	6	4	5	4	49	7	13	7	5	6	7	4			
	6	소	24	13	4	4	4	1	11	2	1	1	1	2	1	3			
	6	소	1					1				1							
	6	소	3					3					3						
	6	소	1					1		1									
	6	소	1					1		1									
	6	소	18					18	3	4	4			6	1				
	6	소	7	5	1		1	3	2	1	1								
	6	소	4					4				4							
	6	소	2					2		2									
단	6	소	1					1				1							
	6	소	1					1		1									
	6	소	1					1			1								
	6	소	1					1				1							
	6	소	1					1	1										
	6	소	1					1											
	6	소	2					2		2									
	6	소	1	1	1			1					1						
	단	7	소	67	22	6	4	7	5	44	7	11	12	3	4	5	2	1	1
		7	소	25	15	5	3	6	1	10	3	2	1	2	1	1			
7		소	3					3		1			2						
7		소	2					2			2								

구	분	구	계	문화관광					건설교통							소방					
				수	관	관	관	관	수	지	인	지	교	도	신	소	소	방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인	7	화교	1						1			1									
		선박	1						1		1										
		토목	19	2		1	1		17	3	4	5			4	1					
		건축	3	3					3												
		지적	2						2				2								
		통신	1						1		1										
		전자통신	1						1			1									
	8	행정,전산	1	1	1																
		행정,지적	1						1				1								
		항공,통신	1						1			1									
		도시계획,토목	1						1	1											
		토목,건축	2	1				1	1			1									
		통신,전자통신	3						2		2							1	1		
		소 계	17	3	2		1		14	2	3		1	2	1	5					
9	행정	9	3	2		1		6	1	1			2								
	환경	1						1													
	토목	3						3	1					1	1						
	건축	1						1							1						
	통신	2						2		2											
	전산,지적	1						1				1									
	소 계	1	1	1																	
10	행정	1	1	1																	
	행정직 계	1	1	1																	
연구	5급 문화재전문위원	1	1	1																	
	연구직 계	1	1	1																	
연구사	학예연구	1	1	1																	
	소방직 계	59															59	19	40		
소	4급 소방정	2															2	1	1		
	5급 소방정	10															10	4	5		
	6급 소방경	4															4	1	3		
	소방위	6															6	3	3		
	7급 소방장	11															11	4	7		
	8급 소방교	24															24	5	19		
	9급 소방사	2															2	1	1		
기	기능직 계	16	5	2	1	1	1	9	1	4	1	1	1	1	1		2	1	1		
	6 소 계	1						1		1											
	통신	1						1		1											
	8 소 계	1						1		1											
	사무	1						1		1											
	9 소 계	6	1			1		4	1	1	1			1			1	1			
	운전	1						1		1											
	사무	4	1			1		2	1								1	1	1		
	전산	1						1				1									
	10 소 계	8	4	2	1		1	3		1		1	1							1	
사무	8	4	2	1		1	3		1		1	1				1	1	1			





<직속기관 - 8개 소방서>

구분	총계	계	소방직						기능직			
			4급 소방정	5급 소방령	6급 소방경	7급 소방위	8급 소방장	9급 소방교	9급 소방사	계	9급 운전	10급 사무
합계	991	988	8	19	54	61	131	300	415	3		3
청주동부소방서	합계	176	175	1	3	8	10	26	55	72	1	1
	본소	35	34	1	3	8	2	7	9	4	1	1
	서소	14	13	1	1	3		3	3	2	1	1
	파출소	15	15		1	3	2	3	4	2		
	구조대	6	6		1	2		1	2			
	합계	123	123				6	14	40	63		
	본소	18	18				2	5	6	5		
	서소	9	9				1	3	3	2		
	파출소	9	9				1	2	3	3		
	구조대	9	9				1	2	2	4		
청주서부소방서	합계	123	122	1	3	8	7	16	35	52	1	1
	본소	35	34	1	3	8	2	6	12	2	1	1
	서소	14	13	1	1	3		3	4	1	1	1
	파출소	15	15		1	3	2	2	6	1		
	구조대	6	6		1	2		1	2			
	합계	79	79				4	8	21	46		
	본소	9	9				1	2	2	4		
	서소	9	9				1	2	2	4		
	파출소	9	9				1	2	2	4		
	구조대	9	9				1	2	2	4		
충주소방서	합계	143	142	1	2	6	9	19	46	59	1	1
	본소	31	30	1	2	6	2	4	8	7	1	1
	서소	14	13	1	1	3		2	3	3	1	1
	파출소	17	17		1	3	2	2	5	4		
	구조대	9	9				5	11	30	48		
	본소	18	18				2	4	8	4		
	서소	9	9				1	2	4	2		
	파출소	9	9				1	2	4	2		
	구조대	9	9				1	2	4	2		
	합계	94	94				5	11	30	48		
제천소방서	합계	148	148	1	3	8	9	20	45	62		
	본소	34	34	1	3	8	2	6	8	6		
	서소	13	13	1	1	3		3	3	2		
	파출소	15	15		1	3	2	2	3	4		
	구조대	6	6		1	2		1	2			
	합계	96	96				5	10	33	48		
	본소	18	18				2	4	4	8		
	서소	9	9				1	2	2	4		
	파출소	9	9				1	2	2	4		
	구조대	9	9				1	2	2	4		
영동소방서	합계	129	129	1	2	6	8	16	39	57		
	본소	28	28	1	2	6	2	4	9	4		
	서소	12	12	1	1	3		2	3	2		
	파출소	16	16		1	3	2	2	6	2		
	구조대	83	83				4	8	22	49		
	본소	18	18				2	4	8	4		
	서소	9	9				1	2	4	2		
	파출소	9	9				1	2	4	2		
	구조대	9	9				1	2	4	2		
	합계	97	97	1	2	6	6	12	29	41		
증평소방서	합계	97	97	1	2	6	6	12	29	41		
	본소	26	26	1	2	6	2	4	8	3		
	서소	14	14	1	1	3		2	5	2		
	파출소	12	12		1	3	2	2	3	1		
	구조대	53	53				2	4	15	32		
	본소	18	18				2	4	6	6		
	서소	9	9				1	2	3	3		
	파출소	9	9				1	2	3	3		
	구조대	9	9				1	2	3	3		
	합계	70	70	1	2	6	5	9	19	28		
진천소방서	합계	70	70	1	2	6	5	9	19	28		
	본소	23	23	1	2	6	2	3	4	5		
	서소	11	11	1	1	3		1	2	3		
	파출소	12	12		1	3	2	2	2	2		
	구조대	38	38				2	4	12	20		
	본소	9	9				1	2	3	3		
	서소	9	9				1	2	3	3		
	파출소	9	9				1	2	3	3		
	구조대	9	9				1	2	3	3		
	합계	105	105	1	2	6	7	13	32	44		
음성소방서	합계	105	105	1	2	6	7	13	32	44		
	본소	30	30	1	2	6	2	3	8	8		
	서소	13	13	1	1	3		2	4	2		
	파출소	17	17		1	3	2	1	4	6		
	구조대	66	66				4	8	22	32		
	본소	9	9				1	2	2	4		
	서소	9	9				1	2	2	4		
	파출소	9	9				1	2	2	4		
	구조대	9	9				1	2	2	4		
	합계	9	9				1	2	2	4		



구분	항목	바이오 산업추진단		건설종합본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경남대 관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내수면연구소								
		계	바이오통합센터	사업지원	총무	도물관리	시영	총주지사	산림	환경	임업	산림	계	관사	양곡	축산	농부	남부	재현			계	농자	농자	계	총무	시영		
																												계	계
일	수익	12										12	2	3		4	1	2											
	수산	2																								2			
	식품위생	1																								1			
	토목	14	2		12	2	6	2	2																				
	건축	2	1	1						1	1																		
	행정·전산	1																						1	1				
	기계·전기	2			1	1																	1	1	1	1			
	항공·토목	1			1	1																							
	임업·임업연구소	1							1	1																			
	8	소계	12			2		1	1	3	1	2								1	1		2	1	1	2	2		
행정	2																						1	1	1				
사회복지	1																									1			
농업	1																		1	1									
임업	3							3	1	2																			
수산	2																									2			
환경	1																					1	1						
토목	2			2			1	1																					
별	6급	별정직계	1																1	1									
	연구직계	1																	1	1									
구	연구직계	29						6	2	4	15	3	2	4	2	1	3	4	4							4			
	9	소계	3					1	1	2			1			1													
	임업연구	1						1	1	1																			
	축산연구	1									1			1															
	가축위생연구	1									1						1												
	10	소계	26					5	2	3	13	3	2	3	2	1	2	4	4							4			
	학예연구	1						1	1																				
	농업연구	4																4	4										
	임업연구	4							4	1	3																		
	축산연구	3										3		3															
가축위생연구	10										10	3	2		2	1	2												
수산연구	4																									4			
기	기	102	4	4	34	2	22	2	8	14	8	3	3	17	3	1	9	2	1	1	18	11	7	10	2	8	3	2	
	6급	소계	1		1	1																							
	기계	1			1	1																							
	7	소계	12			5	1	3	1	1	1		1	1						1	1		3		3		1		
	토목	1			1			1																					
	기계	2			2		2																						
	난방	2																						1	1	1	1		
	운전	3			1		1						1	1															
	농림	1																											
	사무	2			1	1				1	1																		
농림·위생	1																							1	1				
8	8	소계	32	2	2	13	9	1	3	2	2		3	1		1	1		4	3	1	7	2	5	1				
	토목	2			2			1	1																				
	전기	2	1	1																				1	1				
	기계	12			8		6	2												2	1		1	1	1	1			
	난방	2											1	1															
	운전	4			1		1		1	1			1																
	사무	2	1	1																									
	조무	3							1	1														1	1				
	기계·조무	3			2		2																						
	농림·위생	2																							2	2			

구	분	합	바이오 산업추진단		건설종합계획부				산림환경연구소				육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경남대		여	내				
			바이오융합센터	사업지원센터	농	보	시	충	산	임	산	경	방	중	북	남	제	농	중	경			남	대	정	수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기	9	소 계	27	2	2	8	1	3	4	7	2	2	3	5	1	1	2	1	2	1	1	2	1			
		전기	1																							
		난방	1																						1	
		운전	14	1	1	6	1	2	3	2	1		1	3			1	1	1						1	
		농림	1									1	1													
		조우	7	1	1	2		1	1	3		1	2						1	1						
		기계.난방	1							1	1															
		기계.운전	1											1	1			1								
		사우.조우	1											1	1											
농	10	소 계	30			7	6	1	4	3	1	8			6	1	1	11	6	5						
		기계	2			1	1											1	1							
		운전	3							2	2							1	1							
		농림	1							1	1															
		사우	3										2			1	1	1	1							
		조우	19			6	5	1					6		6		1	1	1	1						
전	11	농림.조우	1						1	1																
		사우.조우	1															1	1							





<b>고 시</b>
------------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청원군 강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6블럭내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청원군 강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6블럭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6블럭
  - 나. 대지면적 : 30,388㎡
  - 다. 건축연면적 : 68,207.55㎡
  - 라. 규모 : 아파트 8개동 468세대(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86,635,245천원
5. 사업기간 : 2007. 3 ~ 200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제15조.
7.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및 청원군청 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끝.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7호

충청북도문화재지정고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도지정문화재 지정

가. 지정 대상 문화재

(1) 어제달천충렬사비 (御製達川忠烈祠碑)

(가)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제272호

(나) 문화재명 : 어제달천충렬사비 (御製達川忠烈祠碑)

(다) 소재지 : 충주시 단월동 385-1 충렬사내

(라) 소유자 : 충주시

(마) 관리자 : 충주시

(바) 수량 : 1기(基)

(사) 규모 : 전체높이 308cm, 비높이 183cm · 너비 71cm · 두께 42cm

(아) 재료구조 : 화강암, 비신과 좌대 및 개석을 갖춘

(자) 조성연대 : 1791년(조선 정조 15)

(차) 관리단체 : 충주시

(2) 불설법화삼매경 (佛說法華三昧經)

(가)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제273호

(나) 문화재명 : 불설법화삼매경 (佛說法華三昧經)

(다) 소재지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라) 소유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마) 관리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바) 수량 : 1권(卷)1축(軸)

(사) 구조 : 목판본(木版本)

(아) 양식 : 권축장(卷軸裝)

(자) 규모 : 22.7×678.0cm

(차) 조성연대 : 고려 고종 32년(1245)에 새기고 조선말 후쇄

(3) 선문념송집 <권11> (禪門拈頌集 <卷十一>)

(가)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제274호

(나) 문화재명 : 선문념송집 <권11> (禪門拈頌集 <卷十一>)

(다) 소재지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라) 소유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마) 관리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바) 수량 : 1권(卷)1책(冊)

(사) 구조 : 목판본(木版本)

(아) 양식 : 선장(線裝)

(자) 규모 : 29.4×17.0cm

(차) 조성연대 : 고려 고종 때 새기고 세종년간(1455~1468년)에 찍어냄.

(4) 묘법연화경 <권1~7> (妙法蓮華經 <卷一~七>)

(가)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제275호

(나) 문화재명 : 묘법연화경 <권1~7> (妙法蓮華經 <卷一~七>)

(다) 소재지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라) 소유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마) 관리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바) 수량 : 7권(卷)2책(冊)

(사) 구조 : 목판본(木版本)

(아) 양식 : 선장(線裝)

(자) 규모 : 26.4×16.5cm

(차) 조성연대 : 조선시대(1399년)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가)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제276호

(나) 문화재명 :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다) 소재지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라) 소유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마) 관리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바) 수량 : 1권(卷)1축(軸)

(사) 구조 : 목판본(木版本)

(아) 양식 : 권축장(卷軸裝)

(자) 규모 : 30.0×미상cm

(차) 조성연대 : 고려시대(1011~1031)

## (6)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 (가)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제277호
- (나) 문화재명 :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 (다) 소재지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라) 소유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 (마) 관리자 : 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 구인사
- (바) 수량 : 1권(卷)1첩(帖)
- (사) 재료 : 백색저지(白色楮紙)
- (아) 구조 : 금니사경(金泥寫經)
- (자) 양식 : 첩장(帖裝)
- (차) 규모 : 28.2×1117.0cm
- (카) 조성연대 : 고려시대(1364년경 추정)

## 나. 지정사유

## (1) 어제달천충렬사비 (御製達川忠烈祠碑)

- 충민공 임경업 장군(忠愍公 林慶業 將軍)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후에 신원이 복원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당을 세우고 현판을 내리고 1791년에는 정조가 친히 찬한 '어제달천충렬사비'를 세워 그의 행적을 기리고자 세운 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 (2) 불설법화삼매경 (佛說法華三昧經)

- 불설법화삼매경(佛說法華三昧經)은 불경서로 부처님의 삼매중에서도 법화삼매가 으뜸이라는 내용으로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고려중·말기 목판인쇄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3) 선문념송집 &lt;권11&gt; (禪門拈頌集 &lt;卷十一&gt;)

- 선문념송집 <권11> (禪門拈頌集 <卷十一>)은 불경서로 고려말 목판인쇄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며 그 내용도 부처님에 대한 것으로 훈몽서(訓蒙書)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4) 묘법연화경 &lt;권1~7&gt; (妙法蓮華經 &lt;卷一~七&gt;)

- 묘법연화경권 <1~7> (妙法蓮華經 <卷一~七>)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천태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질병의 치유를 기원하기 위한 불교경전으로 해인사 소장 재조본 대장경과는 달리 판각연대 <간기 刊記>가 없으며 글자체도 달라 초조본으로 사료되어 고려 중기의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6)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 대승계율(大乘戒律)로서 보살이 지켜야할 가장 무거운 계율인 십중계율(十重戒律)과 가벼운 계율인 48중율(重律)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경(寫經)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고려말기의 우리나라 사경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임.

2. 지정일 : 도보 고시일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4-1번지일원 대농3지구 상업2블럭내 (주)신영대농개발 대표 정춘보가 시행하는 신영지웰시티 주상복합건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청주 대농3지구 상업2블럭 신영지웰시티 주상복합건물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신영대농개발 대표 정춘보
  -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번지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4-1번지 일원
  - 나. 대지면적 : 68,839㎡
  - 다. 건축연면적 : 572,394.406㎡
  - 라. 규모 : 아파트 9개동 2,164세대(37~45층), 업무시설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비 : 1,353,973,079천원
5. 사업기간 : 2006. 9 ~ 200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제15조.
7.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및 청주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끝.

## ◎ 충청북도고시 제2006-140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75-27번지 대농1지구내 (주)도움에셋 대표 김상만이 시행하는 금호어울림아파트(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청주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1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도움에셋 대표 김상만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49번지 선능역대우아이빌 815호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75-27번지 일원
  - 나. 규모 : 아파트 17~20층, 12동 6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라. 주요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증감사항
대지면적	40,901m <sup>2</sup>	40,899.64m <sup>2</sup>	- 1.36m <sup>2</sup>
건축면적	8,094.27m <sup>2</sup>	8,121.79m <sup>2</sup>	증 27.52m <sup>2</sup>
연면적	133,371.85m <sup>2</sup>	133,310.69m <sup>2</sup>	- 61.16m <sup>2</sup>

4. 사업비 : 227,222,978천원
5. 사업기간 : 2006. 10 ~ 2009. 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제15조.
7.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및 청주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끝.



◎ 충청북도고시 제2006-1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4-4번지 대농1지구내 (주)도움에셋 대표 김상만이 시행하는 금호어울림아파트(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청주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2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도움에셋 대표 김상만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49번지 선능역대우아이빌 815호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4-4번지 일원
  - 나. 규모 : 아파트 16~20층, 11동 5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라. 주요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증감사항
대지면적	36,635.85㎡	36,637.80㎡	증 1.95㎡
건축면적	6,796.399㎡	6,764.872㎡	- 31.527㎡
연면적	119,673.71㎡	119,565.64㎡	- 108.07㎡

4. 사업비 : 202,968,429천원
5. 사업기간 : 2006. 10 ~ 2009. 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제15조.
7.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및 청주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끝.

# 공 고

## ◎ 충청북도공고 제2006-562호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 구분
제2006-1-충북-26호 (239)	청소년 범죄예방 청주시지역협의회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93-1, 청주시방검찰청 별관202호	노무수	'06. 9. 11.	· 청소년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범죄예방 · 청소년 건전육성 위한 봉사 활동 등	285-9922	신규등록
제2006-1-충북-27호 (240)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13	조보행	'06. 9. 12.	· 자연환경보전운동 추진 · 환경보전 운동의 교육 및 홍보 · 자연 및 지역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대주민지도 및 계몽활동 · 불법자연훼손 및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활동 전개	265-5555	신규등록
제2006-1-충북-28호 (241)	청주공군전우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45 희성빌딩 4층	전재순	'06. 9. 12.	· 시국안보 및 통일 의식 고취 · 공군사관학교 견학 및 모형 항공기 대회 지원	292-0988	신규등록
제2006-1-충북-29호 (242)	(사)대한수렵관리 협회충북지부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981	이민성	'06. 9. 26.	· 야생조수 보호사업 · 유해조수 구제사업 · 수렵강습 · 포획인증 발급대행	265-5845	신규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 구분
제2001-1-충북-26호 (166)	영동군장애인협회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93-1, 청주지방검찰청 별관202호	강기원	'06. 9. 6.	· 결손가정 및 중증장애인자녀 결연사업 및 장학금지원사업 · 결손장애인의 보호·선도 및 재활 자원봉사사업 등	742-8151	대표자 변경등록
제2003-1-충북-8호 (178)	(사)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2가 116-146	김문자	'06. 9. 15.	·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개발과 제도사업 ·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육성 · 건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 외국의 여성단체와 국제교류사업 등	222-8368	단체명칭 변경등록
제2002-1-충북-15호 (148)	음성사랑나눔 공동체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48-15 중앙빌딩 4층	이석문 · 주상보	'06. 9. 25.	·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자활공동체 조직운영 지원 · 청정환경보전 ·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873-0322	대표자 변경등록
제2003-1-충북-9호 (179)	충북숲해설가협회	청주시 흥덕구 문화동 67-9	윤석위	'06. 9. 26.	· 숲 안내 해설 및 제도 활동 · 숲 해설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숲 해설가 양성교육 등	255-2845	대표자 변경등록

## ◎ 충청북도공고 제2006-568호

##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 1. 사용개시구간

일련 번호	도로의 종 류	노선명	사용개시구간			주 요 경과지	개시일자	비 고
			시 점	종 점	전용구간 (km)			
1	지방도	575호 (청성-청천)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2.26	없음	공고일부터	도로확장 및 포장완료

2. 비 고 : 관련 도면은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과 (전화 043-220-4725)에 비치  
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충청북도공고 제2006-570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도정 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내 영상미디어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신설
  -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 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정보통신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정보통신담당관실(전화번호 220~2742, FAX 220~27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정보통신 담당관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영상콘텐츠 제작 공급</li> <li>-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li> <li>-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li> </ul>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 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제8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민간위탁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정보통신담당관실	1	○ 「인터넷디지털 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인터넷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 공급 -도점실황 입체적인 영상 확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제8조
<생략>	1~8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2~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관련 사업
4.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인력, 자금 등 지원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6. 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
7. 중앙정부, 충청북도에서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

**제8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북도공고 제2006-571호

충청북도지정문화재지정예고공고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 등 6건의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문화재 지정예고 사항

가.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

- (1)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 (2) 문화재명 :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
-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648 광제사
- (4) 소유자 : 박재용
- (5) 관리자 : 박재용
- (6) 수량 : 1권1첩
- (7) 규모 : 전엽 31.7cm×1,137cm <1판 23.5×49.0cm>
- (8) 재료 : 저지
- (9) 양식 : 선풍장(절첩본)
- (10) 조성연대 : 고려시대

나.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2>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十二>)

- (1)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 (2) 문화재명 :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2>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十二>)
-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648 광제사
- (4) 소유자 : 박재용
- (5) 관리자 : 박재용
- (6) 수량 : 1권1축
- (7) 규모 : 전엽 26.0cm×916.0cm, 1판 24.0cm×51.0cm
- (8) 재료 : 저지

(9) 양 식 : 권축장(권자본)

(10) 조성연대 : 고려시대

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3~4> (大方光佛華嚴經疏 <卷第三~四>)

(1)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2) 문화재명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3~4> (大方光佛華嚴經疏 <卷第三~四>)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648 광제사

(4) 소유자 : 박재용

(5) 관리자 : 박재용

(6) 수량 : 2권1책

(7) 규 모 : 33.2cm×21.3cm

(8) 재 료 : 저지

(9) 양 식 : 선장본

(10) 조성연대 : 조선초기

라. 선문념송집 <권제4~6> (禪門拈頌集 <卷第四~六>)

(1)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2) 문화재명 : 선문념송집 <권제4~6> (禪門拈頌集 <卷第四~六>)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648 광제사

(4) 소유자 : 박재용

(5) 관리자 : 박재용

(6) 수량 : 3권1책

(7) 규 모 : 29.2cm×20.3cm

(8) 재 료 : 저지

(9) 양 식 : 선장본

(10) 조성연대 : 조선초기

마. 불설법화삼매경(佛說法華三昧徑)

(1)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2) 문화재명 : 불설법화삼매경(佛說法華三昧徑)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648 광제사

(4) 소유자 : 박재용

(5) 관리자 : 박재용

(6) 수량 : 1권1축

(7) 규 모 : 전엽 26.3cm×676.0cm, 1판 22.8cm×28.5cm

- (8) 재 료 : 저지
- (9) 양 식 : 권축장
- (10) 조성연대 : 조선초기

바. 불설대승조상공덕경 권하(佛說大乘造像功德經 卷下)

- (1) 지정종목 : 유형문화재
- (2) 문화재명 : 불설대승조상공덕경 권하(佛說大乘造像功德經 卷下)
-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648 광제사
- (4) 소유자 : 박재용
- (5) 관리자 : 박재용
- (6) 수 량 : 1권1축
- (7) 규 모 : 전엽 25.5cm×652.0cm, 1판 26.8cm×47.0cm
- (8) 재 료 : 저지
- (9) 양 식 : 권축장
- (10) 조성연대 : 조선초기

2. 지정사유

가.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

-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 불경의 연구와 고려시대 목판인쇄술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학술상 가치가 크다.

나.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2> (大方光佛華嚴經 <卷第三十二>)

-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 불경의 연구와 고려시대 목판인쇄술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학술상 가치가 크다.

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3~4> (大方光佛華嚴經疏 <卷第三~四>)

-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

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  
으로

- 송과 고려 및 일본의 동양 3국의 문화교류의 증거물로서 귀중한 자료이  
며, 불경의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라. 선문념송집 <권제4~6> (禪門拈頌集 <卷第四~六>)

- 「선문념송집」은 선림(禪林)의 고화(古話) 1,125칙과 여러 선사의 념송  
(拈頌) 등의 중요한 말을 모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고려의 승려 무  
의자 혜심(無衣子 慧諶, 1178-1234)이 고종 13(1226)년에 조계산 수선사  
에 있을 때에 30권 10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 이 「선문념송집」은 고려시대 우리나라 승려의 저술을 조선시대에 사찰  
에서 간행한 것으로 불교의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불설법화삼매경(佛說法華三昧徑)

-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  
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  
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불경의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바. 불설대승조상공덕경 권하(佛說大乘造像功德經 卷下)

- 「조상공덕경」은 「불설대승조상공덕경」의 약칭으로 불상을 조성하는 공  
덕에 대하여 설한 경전으로 당의 제운반야(提雲般若)가 2권으로 번역한  
것 중의 하권이다. 불상의 복장에 봉안할 목적으로 인경한 것으로 보이  
며 불경의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  
한 가치가 있다.

3.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4. 특기사항 : 지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나 충주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연락처

(가) 충청북도

○ 전 화 : (043) 220 - 4132

○ FAX : (043) 220-4119

○ E-mail : leekh@cb21.net

○ 주 소 : (우 360-7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나) 관할 시·군

○ 청원군 문화공보과 (043) 250 - 3055

## ◎ 충청북도공고 제2006-572호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 제130513호	(주)한울정보통신 대표 김현주 (750603-2*****)	청주 상당구 우암동 268-8(준영빌딩3층)	영업정지 1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1 (등록기준미달)

○ 충청북도공고 제2006-574호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 제 정 이 유

- 항공 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 이라 6월~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 분기점인 60~70% 탑승율 보전을 통한 국제항공노선 취항 유도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요내용 : 붙임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0월 25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 낼 곳 : 충청북도 관광과 043)220-4281~2
- 방 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 제 출 자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등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 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규모 등)** ①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5조(간접지원)**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통하여 간접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부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금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②제5조 규정에 의한 간접지원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기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 Ⓞ )		
신청금액	일금 ( ₩ )			
산출내역				
운항노선				
여객운임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		운 항 회 수		
탑승현황	공급좌석 수			
	탑 승 객 수			
<p>충청북도청주국제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p> <p>                    년                    월                    일</p> <p>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p>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p>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p> <p>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p> <p>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p> <p>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톤수)</p> <p>                    5. 운항 사실 기록부</p> <p>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부</p> <p>                    7.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p>				

# 시군행정

◎ 충주시고시 제2006-97호

**충주 도시계획시설(학교:충주대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충주이류 도시계획시설(학교:충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와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 주 시 장 인

1.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조서

가. 대 학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변경	41	학교	충주대학교	충주시 이류면 점단리123일원	553,807	충북고시 2004-114호 2004.7.23

나. 세부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면 적 ( m <sup>2</sup> )			건 폐 율	용 적 율	층 수	비 고
		부 지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기 정	계	553.807	39.861	128.180	40%이	100%이	※건축부지 240.673m <sup>2</sup>	
변 경	계	553.807	43.580	133.539	하	하	※건축부지 241.283m <sup>2</sup>	
기 정	교육기본시 설	109.457	22.520	72.455	40%이 하	100%이 하	6층이하 강의동 외7개소	
기 정	체육시설	45.024	5.556	6.211	40%이 하	100%이 하	2층이하 야외공연장 외1개소	
기 정	실습시설	24.257	3.440	9.017	40%이 하	100%이 하	6층이하 공동실험관 외1개소	
기 정	지원시설	59.787	7.767	39.919	40%이	100%이	9층이하 기숙사의 3개소	
변 경	지원시설	60.397	11.486	45.278	하	하	9층이하 기숙사의 4개소	
기 정	기반시설	52.320	578	578	40%이 하	100%이 하	2층이하 폐수처리장 2,148m <sup>2</sup> 외2건	
기 정	녹지시설	262.962	-	-	-	-	-	
변 경	녹지시설	262.352	-	-	-	-	-	

◎ 충주시고시 제2006-99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탄금대공원) 및 산척송강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 주 시 장 인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충주도시계획시설(공원:탄금공원)

변경	2	탄금대 공원	근린 공원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면적(m <sup>2</sup> )			최초 승인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02,300	-	302,300	건고 제86-478호 86년10월21일	세부시설 위치변경

○ 세부시설결정조서 : 생략(변경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15-2	편익시설 (일반음식점) 위치변경	탄금대공원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물이 노후하여 기존의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 하고 신축을 위한 건축물 위치변경

2. 충주 산척송강지구

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취결정일	비고
신설	1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75번지 일원	75,685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취결정일	비고
신설	1	산척송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75번지 일원	75,685	신설	

2) 가구 및 획지계획의 규모와 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계		75,685		75,685	
①	-	62,520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75번지일원	62,520	공장용지
②	-	11,000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683-5번지일원	11,000	공장용지
③	-	1,434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683-3번지일원	1,434	도로용지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683-5번지일원	용도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사목, 제17호) 및 부대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별첨 도면참조 "
		형태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경량철골조, 목조
		색채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②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75번지일원	용도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사목, 제17호) 및 부대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별첨 도면참조 "
		형태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경량철골조, 목조
		색채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함

나)도로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③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683-3번지일원	용도	도로시설
		배치	" 별첨 도면참조 "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가감속차선의 확보	
진·출입 동선	진출입로 각각 회전반경 R=12m이상 확보 입구폭 29m이상 확보 단지 내 도로 곡선반경 R=20m이상 확보 및 곡선부 확폭 설치 단지 내 도로 폭은 B=8.0m, 인도폭 2.0m이상 설치, 길이 120m	
주차대수	50대이상	

○ 산척송강지구 결정(신설) 사유서

지구명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산척송강지구	신설	지역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장용지 확보.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붙임 생략

관계도서를 충주시청 지역개발과(☎043-850-61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음성군고시 제2006-56호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 고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일원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음성군수

1. 목 적 :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2. 위 치 :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일원
3.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위 치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외 13필지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외 13필지	
용도지역	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	
사업목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지면적	31,636㎡	31,636㎡	
개발면적	0 주거용지 : 5,640.26㎡ 0 공공용지 : 16,355.5㎡ 0 녹지용지 : 9,640.24㎡	0 주거용지 : 5,642.76㎡ 0 공공용지 : 16,355.5㎡ 0 녹지용지 : 9,637.74㎡	
건폐율(%)	17.82	17.83	
용적율(%)	149.94	149.95	

4. 열람장소 :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1~5)
5.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조서 : 계속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음성군	-	(주)부영 지구단위계획구역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일원	31,636	-	31,636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m <sup>2</sup> )	변경 결정 사유
기정	-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일원	31,636	○ 2006.05.04 변경결정고시
변경	-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 일원	31,636	○ 시행자변경(김승기→이희성) ○ 토지이용계획변경 -주거용지: 5,620.35→5,640.26m <sup>2</sup> -녹지용지: 9,660.15→9,640.24m <sup>2</sup> ○ 건축계획변경 -건폐율 : 17.76→17.82% -용적율 : 149.88→149.94%

▣ 건축물 용도·용적율·건폐율·높이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대소면 대풍리 621번지일원	지정용도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건폐율	20%이하(17.82%→17.83%)
		용적률	150%이하(149.94%→149.95%)
		높이	12층이하(33.40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11	지원시설	○ 학생회관 - 부지면적 (기정)24,115㎡ (변경)12,347㎡ (감)11,768㎡ ○ 대학본부2 (기정) 부지 면적 8,082㎡ 건축 면적 1,150㎡ 건축연면적 8,000㎡ (변경) 부지 면적 19,850㎡ 건축 면적 4,662.10㎡ 건축연면적 13,169.67㎡ (증) 부지 면적 11,768㎡ 건축 면적 3,512.10㎡ 건축연면적 5,169.67㎡	산학협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산학연구시설, 행정시설, 국제회의장·세미나실, 전시시설, 후생복지시설등을 수용하여 학생 및 교수들에게 최상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중앙도서관 및 학생회관 부지 중 일부(비탈면)가 대학본부 공사에 포함되어 부지면적 변경 (전체 부지면적 증감 없음)
15		○ 휴게소 (신설) 부지 면적 610㎡ 건축 면적 206.85㎡ 건축연면적 189.48㎡	학교 앞 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학교버스 휴게소를 신설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충주대학교)결정지형도면승인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를 충주시청 지역개발과(☎850-61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음성군고시 제2006-58호

##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고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38-2번지 일원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음 성 군 수

1. 목 적 :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 고시
2. 위 치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38-2번지 일원
3.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 내용

구분	변경결정내용		비고
사업명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 결정(양조장)		
위치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38-2번지 외1필지		
용도지역	녹지(자연)지역		
사업목적	양조장 건설		
구역면적	10,727㎡		
토지이용계획 (㎡)	공업용지	4,475 → 7,443.43	건폐율 10.73→10.88% 용적률 10.73→10.83%
	공공시설	4,980.49 → 1,082.56	
	녹지용지	1,271.51 → 2,201.01	

4. 열람장소 : 관련도서를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구역결정 조서 : 계속

■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신 설	3번 편입용지도	금 왕 양 조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338-2번지의외1필지	10,727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결 정 내 용	변경결정사유
결정도	금왕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별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li> <li>• 위치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38-2번지 외1필지</li> <li>• 면적 : 10,727m<sup>2</sup></li> </ul>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건물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대지면적(m <sup>2</sup> )	
10번 가구 및 획지계획 평 면 도	가동	660 → 661.04	340-2	9,458	공 장
	나동	330	338-2	1,269	공장 및 부대시설
	다동	162 → 170.64	340-2	9,458	일반창고
합 계		1,152 → 1,161.68	2 필지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9번 9-1,2번 건 물 배치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38-2번지 외1필지	용 도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건 폐 율	20% 이하 (10.88%)	
		용 적 율	100% 이하 (10.83%)	
		높 이	1 층 (H=8.0 m)	

## ◎ 음성군고시 제2006-59호

##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 고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669번지 외 7필지 일원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음성군수

1. 목 적 :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2. 위 치 :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669번지 외 7필지 일원
3.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대비	
사업장 위치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669번지 외 7필지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669번지 외 7필지	변경없음	
사업부지	126,820 m <sup>2</sup>	126,820 m <sup>2</sup>	변경없음	
개발면적	공업용지	45,060.00	46,752.00	+1,692.00m <sup>2</sup> (+3.75%)
	녹지용지	28,429.00	27,098.00	-1,331.00m <sup>2</sup> (-4.68%)
	공공시설용지	44,952.00	44,591.00	-361.00m <sup>2</sup> (-0.80%)
	주거용지	8,379.00	8,379.00	변경없음
	합 계	126,820.00	126,820.00	변경없음
건 폐 율	10.44 %	10.58 %	+ 0.14 %	
용 적 율	13.74 %	15.26 %	+ 1.52 %	

4. 열람장소 : 관련도서를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조서 : 계속

■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126,820	-	126,820	100.00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종 결정일	비 고
기 정	결정도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삼성면 선정리 669번지 외 7필지	126,820	95.12.20	(주)청구
변 경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삼성면 선정리 669번지 외 7필지	126,820	-	(주)스타 플렉스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토지이용 계획도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지 : 45,060.00㎡ → 46,752.00㎡(3.75%)</li> <li>• 녹지용지 : 28,429.00㎡ → 27,098.00㎡(-4.68%)</li> <li>• 공공시설용지 : 44,952.00㎡ → 44,591.00㎡(-0.80%)</li> <li>• 주거용지 : 8,379.00㎡ → 8,379.00㎡(변경없음)</li> </ul>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 른 제2종 지구단위(개발) 계획의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 축 배치도	음성 삼성 선정 669번지 외 7필지 면적 : 126,820㎡	용 도	지정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10.44% → 10.58%)
		용 적 율	150% 이하 (13.74% → 15.26%)
		높 이	최고 5층 20m 이하 (5층, 18.0m)

◎ 음성군고시 제2006-60호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 고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6-1번지 일원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음 성 군 수

1. 목 적 :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2. 위 치 :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6-1번지 일원
3.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대비	
사업장 위치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6-1번지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6-1번지	변경없음	
사업부지	51,385 m <sup>2</sup>	51,385 m <sup>2</sup>	변경없음	
개발면적	공업용지	14,440.00	16,095.00	+1,655.00m <sup>2</sup> (+11.4%)
	녹지용지	17,590.00	17,875.00	+285.00m <sup>2</sup> (+1.62%)
	공공시설용지	19,355.00	17,415.00	-1,940.00m <sup>2</sup> (-10.02%)
	합 계	51,385.00	51,385.00	변경없음
건축면적	12,797.87 m <sup>2</sup>	14,323.35 m <sup>2</sup>	+1,525.48m <sup>2</sup> (+11.92%)	
건축연면적	13,565.26 m <sup>2</sup>	15,743.99 m <sup>2</sup>	+2,178.73m <sup>2</sup> (+16.06%)	
건 폐 율	24.91 %	27.87 %	+ 2.96 %	
용 적 율	26.40 %	30.64 %	+ 4.24 %	

4. 열람장소 : 관련도서를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조서 : 계속

■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결 정일	비고
변경 없음	결정도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삼성면 용성리 76-1번지	51,385	05.09.09	한국화 장품(주)

▣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결정도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공업용지 14,440㎡ → 16,095㎡(+11.46%) • 공공시설용지 19,355㎡ → 17,415㎡(-10.02%) • 녹지용지 17,590㎡ → 17,875㎡(+1.62%)	건축물(부대시설) 증축에 의한 획 지변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개 발)계획의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규모(㎡)	
7번 가구 및 획지계획도	산업	51,385	76-1	51,385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5번 건축 배치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6-1번지 면적: 51,385㎡	용도	지정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60% 이하 (24.91% → 27.87%)
		용적율	150% 이하 (26.40% → 30.64%)
		높이	최고 5층, 20m이하 (3층, 20m)

## ◎ 단양군고시 제2006-30호

**매포 도담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단양군 매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의 세부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단 양 군 수

1. 건 명 : 매포 도담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결정(변경)
2. 위 치 :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4-1번지 일대
3. 면 적 : 548,100㎡
4. 도담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따로붙임
5. 도담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도면 : 실음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는 단양군청 건설과(043)420-3194)에 비치열람



## 도담 도시자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1. 도담 도시자연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도담자연공원	단양군 매포읍 하피리 산14-1임 일대	548,100	-	548,100	

### 2. 시설별(변경)결정조서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48,100		548,100						
도로	6,452		6,452						
조경시설	51,182	3	51,185						
운동시설	42,359		42,359						
교양시설	5,700		5,700						
관리시설	3,069	△3	3,066						
녹지	439,338		439,338						







◎ 음성군공고 제2006-111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음성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기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음성군수 인

1. 등록 및 폐기 사유 :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2006.5.17. 조례 제1809호)으로 기금 명칭 변경
2.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06. 10. 9.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06. 10. 9.
3. 등록 및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인영	등록 공인명	인영
음성군청 소년자립 지원사업기 금운용관인		음성군청 소년육성기 금운용관인	
음성군청 소년자립 지원사업기 금출납원인		음성군청 소년육성기 금출납원인	

**기 타**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2006-35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인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구 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수안보제2터널 앞(하행선) ~ 안보리 월악산 교차로(하행선) (L=4.5km)
기 간	2006년 10월 10일(화) 06:00부터 ~ 2006년 11월 30일(목) 18:00까지		
<p>사유 : 법면정비공사 구간의 절개지가 매우 높아(약60m정도) 암파쇄 방호시설 (H=6m)등 가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파쇄된 암석이 도로상으로 떨어져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예상되어 문경방면 하행선의 통행금지가 불가피함.</p>			
<p>우회도로지정 : 구국도 이용 (L=6.0km) 수안보제2터널 앞-----수안보면내-----월악교차로 4.0km 2.0km</p>			

첨부서류 : 위치도 1부.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8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 [한창공업] 시행자지정 행정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득한후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①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430-1번지
- ② 대표자 성명 : 한창공업 대표 정순거

나.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①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5-3번지 일원
- ② 면 적 : 1,828㎡

다. 처분예정내용 :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2. 처분예정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획기한내 사업미완료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229-4384)로 문의 바랍니다.

※ 이 도보의 판매가격은 8,030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